

장애이용 위생시설 설치기준 - 화장실

설치장소

- 장애이용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장애이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(문)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

- 별도의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일반 남·여 화장실에 각각 장애인 겸용 화장실을 설치한다.
- 공간분할 기술상으로는 벽 쪽에 붙어있는 한칸이 장애인 겸용인 경우가 많다.
- 변기가 하나뿐인 소형 화장실에서는 그 자체를 장애인 겸용 화장실로 설치한다.

재질과 마감

-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,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.
- 화장실의 0.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.
- 참고사항
- 난간이나 출입구 벽면에 점자 안내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.

기타 설비

- 화장실의 출입구(문) 옆 벽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 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- 세정장치, 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, 누름버튼식,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.

그림으로 보기 1



활동공간

- 대변기의 칸막이는 유효바닥면적이 폭 1.0미터이상, 깊이 1.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.75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,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.4미터×1.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.
-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.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,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.

구조

-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,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.
-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4미터이상 0.45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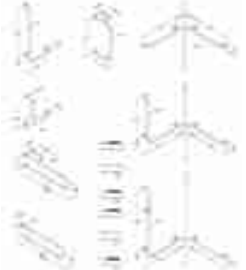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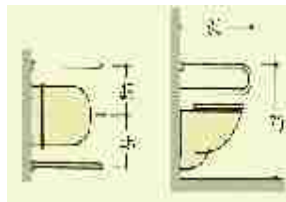


손잡이

-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,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,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.
-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6미터이상 0.7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,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.45미터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.7미터내외로 할 수 있다.
-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.9미터이상으로 하되,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.6미터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손잡이의 안정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,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.
-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×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.

● 기타 설비

- 세정장치·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● 그림으로 보기 |

			
화장실통과 출입문 유효폭과 형태	휠체어의 의자와 화장실 활동공간	대변기의 구조	유형별 손잡이 설치방법
			
손잡이	변기손잡이(접어올린 상태)	변기 손잡이 (펼쳐 내린상태)	

● 구조

-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.

● 손잡이

-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미터이상 0.9미터이하,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.55미터내외,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.6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.
-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.1미터이상 1.2미터이하,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.25미터내외로 하여야 하며,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● 구조

-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85미터이하, 하단높이는 0.6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● 손잡이 및 기타 설비

-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.
- 수도꼭지는 냉·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.
-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.65미터이상,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.9미터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, 거울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할 수 있다.

● 그림으로 보기 |

		
세면기 구조		높이조절형 세면기 구조
		
세면대 및 거울		자동감지형 수도꼭지